조류인플루엔자(AI)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2011년 1월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567 권용팔 외 2인의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(AI)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

○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 농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축산기반을 보호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류인플루엔자(AI) 피해농가의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 토지 소유자(권용팔 외 2인)의 가축시설 및 당해 토지의 재산세 1,636천원(건축물 982, 토지 654)을 면제하고자 함.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

5. 검토의견

○ 성주군수로 부터 제안된 성주군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“가축전염병”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1월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(AI) 피해농가 권용팔(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567) 외 2인에 대하여 지방세 중 재산세 건축물분 992,000원과 토지분 654,000원으로 총 1,636,000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.

○ 조류인플루엔자(AI)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‘제3조 제1항 다호’의 ‘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인한 피해’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감면의 형식적 절차와 합법성을 확보하자 함입니다. 이는 유사 사항인 구제역 등에 대하여 이미 타 시도에서 감면의 조치가 있었고, 현 경북 도내 15개 시·군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(AI)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해농가의 사기앙양과 재정적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